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
----------	----

제출년월일 : 2001. 12. 4.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7399호)이 2001. 10. 31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특별휴가기간을 연장하여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의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안 제23조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7399호, 2001.10.31)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특별휴가) ① (생략)</p> <p>②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u>60일</u>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style="text-align: center;">----- <u>90일</u> -----</p> <p style="text-align: center;">-----</p>